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

산업자원부

산업자원부는 LPG경차 및 LPG하이브리드차를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. 관련내용을 게재한다.

산업자원부 공고 제 2008 - 5 호

"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"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08. 1. 16
산업자원부장관

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○ "알기쉬운 법령 만들기"(법제처)의 일환으로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(법률 제8358호, 2007. 4. 11, 공포 시행) 및 같은 법 시행령(대통령령 제20258호, 2007. 9. 10, 공포 시행)이 개정됨에 따라, 이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은 법률 및 대통령령의 조문번호와 주요용어 · 표현 등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

○ 제14차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('06.12.22)에 수송부문 에너지이용 효율 향상을 위해 경차 보급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경차에 LPG사용 허용 검토 보고에 따른 후속조치와,

○ "환경 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"에 따른 하이브리드차의 보급 촉진을 위해 부품업체 육성에 필요한 생산물량 확보 및 기술개발 지원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LPG 사용을 허용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"알기쉬운 법령 만들기"에 따른 "액

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" 개정 후속조치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전문 개정

나. 자동차관리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중 경형자동차(배기량 1,000cc 미만)에 액화석유가스 사용 허용(안 제53조 제2항)

다. LPG경차관련 조항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제작·수입되는 경형 승용차부터 적용(부칙 제3조 신설)

라. "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법률" 제2조 제5호에 의한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액화석유가스 사용 허용(안 제53조 제3호 및 부칙 제2조 신설)

3. 의견제출

이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(단체) 또는 개인은 2008년 2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(참조 : 가스산업팀, 전화 02-2110-5470, 팩스 02-504-4506)에게 제출하여 주시고, 동법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 (http : // www.mocie.go.kr→행정정보공개→법령정보→입법예고)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다. 기타 참고사항

* 보내실 곳 : 산업자원부 에너지산업본부 가스산업팀
ㅇ 주소 : 경기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(우편번호 : 427-723)
ㅇ E-mail : leemj@mocie.go.kr

산업자원부령 제 호
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

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"제56조의2"를 "제53조"로 한다.
제56조의2중 "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"를 "법 제36조에 따라"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괄호안 단서조항중 "승차정원이 7인이상인 경우에 한한다"를 "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에 따른 경형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승차정원이 7인이상인 경우를 말한다"로 한다.
제56조의2 "제3호"를 제53조 "제4호"로 하고 같은 조에 "제3호"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
3. "환경 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법률" 제2조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
제56조의2의 "제4호, 제5호, 제6호"는 제53조의 "제5호, 제6호, 제7호"로 한다

부 칙

제2조(유효기간) 이 규칙 제53조 제3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제3조(적용례) 제53조 제2호의 경형 승용자동차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제작·수입되는 경형 승용자동차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정안
제56조의2(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)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외의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한다.	제53조(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) ----------법 제36조에 따라 ----------.
1.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승용자동차	1. ----------
2. 「자동차관리법」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(승차정원이 7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) · 승합자동차 ·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. 다만, 화물자동차중 외형이 승용자동차와 유사한 밴형 화물자동차를 제외한다.	2. ----------(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에 따른 경형에 해당하는 경우와 승차정원이 7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) ----------.
〈 신 설 〉	3. 「환경 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
3 ~ 6. (생 략)	4 ~ 7. (현행 제3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)
부칙	부칙
〈 신 설 〉	제2조(유효기간) 이 규칙 제53조 제3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〈 신 설 〉	제3조(적용례) 제53조 제2호의 경형승용자동차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제작 · 수입되는 경형 승용자동차부터 적용한다.